

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[별표 6] <개정 2016.3.25.>

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(제14조제1항제7호 관련)

구 분		2급	3급	4급	5급
연구 또는 근무경력	박 사	12년 이상	8년 이상	4년 이상	-
	석 사	16년 이상	12년 이상	8년 이상	4년 이상

비고 :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임